

서울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2040728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204072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가합10107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C(개명 전 성명: D)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김홍섭

변론종결 2023. 4. 5.

판결선고 2023. 5. 10.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가합10107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92,712,55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17,712,55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들은 합동하여 125,712,43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92,712,550원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기존의 청구원인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변경하고,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을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으며, 피고 F에 대한 125,712,432원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기존의 청구원인을 보증채무금 청구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H과 합동하여 92,712,55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17,712,55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들은 합동하여 125,712,43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택한다).

나. 피고 F

제1심판결 중 피고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7. B와 사이에 ‘원고와 B은 주식회사 J에서 주식회사 O로부터 구입한 617,724주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주식 중 원고가 부담한 200,000,000원에 해당하는 167,926주의 소유권은 원고가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62,374주를 제외한 105,552주를 2013. 4. 30.까지 B이 원고에게 조건 없이 반환한다. B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금액은 2012. 11. 30. 현재 399,773,500원임을 인정하고, 2012. 12. 말일부터 2013. 3. 31.까지 매월 말일 전까지 각 10,000,000원 이상을 변제하고, 2013. 4. 30.까지 전액을 변제 완료한다. B은 위 채무 변제금의 잔액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연 30%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다. 2013. 4. 30.까지 위 채무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되면 G 주식 105,552주 반환의무의 이행을 면제시켜 준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0. B, H 및 피고 C와 사이에 ‘B 금감원 고발 취소, 원고 고소취하’를 합의조건으로 B, H 및 피고 C이 원고에게 형사합의금(92,712,566원)으로 2014. 8. 31. 25,000,000원, 2014. 11. 30. 25,000,000원, 2015. 2. 28. 25,000,000원, 2015. 5. 31. 17,712,550원 등 합계 92,712,5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F이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 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5. 30. B와 사이에 차용금액 267,000,000원과 변제금액 174,287,434원의 차액인 92,712,566원에 관하여 2014. 8. 31. 25,000,000원, 2014. 11. 30. 25,000,000원, 2015. 2. 28. 25,000,000원, 2015. 5. 31. 17,712,550원 등 합계 92,712,550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 F이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 협약서'(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 및 H을 상대로 이 사건 형사합의협약서에 기한 형사합의금 92,712,55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6304)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가 B에 대한 합계 267,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등의 담보를 위하여 2011. 10. 7. H의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U 대 380㎡ 외 4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2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와 H 사이에 원고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여, H이 2014. 12. 8. V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12. 15. 원고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V 명의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V이 2017. 6. 23. 합계 283,632,463원을 배당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채무변제협약서와 이 사건 형사합의협약서로 지급을 약속한 92,712,566원은 B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자체 내지 그 일부로서 동일한 채무이고, 위 92,712,566원의 채무를 포함하는 원고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V의 H에 대한 새로운 대여금으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28. 원고의 피고들 및 H에 대한 위 92,712,550원의 형사합의금 지급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8나71205) 2019. 11.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다299430) 2020. 4. 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심급을 불문하고 통틀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보증채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선행소송에서 합의서(갑 제2호증의 3)에 관하여 원고가 위조한 서류라고 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함으로써 선행소송 법원을 기망하였고, 이를 통해 선행소송의 판결문을 획득함으로써 92,712,566원 상당의 소송상 채무가 면제되는 이득을 얻고, 그에 상당하는 범죄수익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조의 손해배상금으로 92,712,5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2014. 12. 8. 작성된 합의서(갑 제2호증의 3)를 원고가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위 법원이 위 합의서에 H 등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허위의 주장으로 선행소송 법원을 기망하였다거나 92,712,566원 상당의 소송상 채무를 면하여 그에 상당하는 범죄수익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보증채무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92,712,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형사합의확약서상 채무자로서, 피고 F은 위 형사합의확약서 및 이 사건 채무변제확약서상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각 문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H과 합동하여 92,712,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피고들 및 H을 상대로 이 사건 형사합의확약서에 기한 형사합의금 92,712,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채무변제확약서상의 92,712,566원과 이 사건 형사합의확약서상의 92,712,566원이 B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자체 내지 그 일부로서 동일한 채무임을 전제로, 위 채무가 H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합의확약서상 채무와 구분되는 이 사건 채무변제확약서상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92,712,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를 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무금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손해배상금으로, 예비적으로는 보증채무금으로 92,712,566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G 주식 105,552주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피고 C에게 보관시켜 둔 채 현재까지 위 주식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B의 내연녀이자 경제적 공동체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예비적으로는 구상금으로 위 주식의 매수대금 상당액인 125,712,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F에 대한 보증채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F은 이 사건 채무변제확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함으로써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전부를 보증하였고, 이후에도 확인서(갑 제5호증), 형사합의서(갑 제6호증)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한 지급을 약속하거나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 F은 원고에게 125,712,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 F은 2013. 6. 24.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H 소유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 해제하는 조건으로 강원도 평창군 S 소재 T리조트 매입절차가 완료되면 발생하는 커미션에서 채권자 A에게 최우선 변제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 또한 피고 F은 2016. 1.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F을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F은 원고에게 2016. 2. 15.까지 3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 F이 B에 대한 채무보증한 건은 2017. 6. 30.까지 완결하며, 미완결시 피고 F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형사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F이 이 사건 채무변제확약서 및 형사합의확약서에 기하여 연대보증한 채무 외에 B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였다거나 연대보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F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최항석, 판사 공도일, 판사 성언주